

부산지방법원 2018. 9. 5 선고 2018가단808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온나라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5.

주 문

1.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대 43m²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. 6. 30. 접수 제377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창현

별지